

고객이 행복한 1등 공기업

2020 인권영향평가 실시 보고서



2020년 문경관광진흥공단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1 인권경영 추진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전 세계적으로 인권존중 및 보호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공공기관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경영 선도적 역할 대두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매뉴얼 적용 권고 및 실천선도 역할 요구
- 공단의 경영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 상황을 파악, 개선하여 인권 존중문화에 앞장서고자 함.

□ 추진개념

- 「인권경영 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적이며 필수적 절차
 - 경영활동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측정
 -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제시
- 기업의 인권 실천·점검의무(Due Diligence-실사)를 위한 핵심 도구
 - 기업의 경영의 이해관계자들 인권 침해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
 - 인권의 위험요소 관리 및 새로운 사회적 가치창출로의 기회로 인식

□ 추진근거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국가인권위원회, 2018)
- 문경관광진흥공단 인권경영 추진계획-경영지원팀-2847(20.08.21)
- 문경관광진흥공단 인권경영실행지침-18.12.31.제정
- 문경관광진흥공단 중장기 경영계획 -19.12.31.

2

추진경과

□ 인권경영 추진내용

추진일정	내 용	비 고
2018.10.22.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2018.11.19.	▶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2018.12.06.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 총5명(외부:2명/내부-3명)	
2018.12.17.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위촉	
2018.12.21.	▶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 인권경영 실행지침 및 인권경영현장 제정심의	
2018.12.31.	▶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정 공포 ▶ 인권경영현장 제정	송년회 개최시
2019.01.10.	▶ 인권경영현장 공유 및 확산	전국시설관리공단·공사
2019.10.22	▶ 인권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	
2019.10.~11.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 인권영향평가 추진개념 및 근거 등 설명 - 인권영향평가 지표 검토 및 설정	사업별 팀장/담당
2019.12.2.~ 12.10	▶ 인권영향평가 실시	기관운영·주요사업 영향평가
2019.12.19.	▶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
2020. 4.	▶ 2019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및 공개	-
2020. 1. ~ 6.	▶ 인권존중문화 확산 인권관련 교육 실시	인권경영 공감대 형성
2020. 8. 21.	▶ 2020 인권경영 추진계획(안) 수립 - 2019년 인권경영 성과분석	
2020. 10. 19.	▶ 2020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변경 및 위촉	
2020. 11. 9.	▶ 인권영향평가 추진 기본계획(안) 수립	-
2020. 11. 16.	▶ 인권경영실무진 인권영향평가 추진 검토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평가지표 적정성 - 향후 인권경영 활동 추진방향 논의	
2020.11.20.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및 보고	
2020. 11.30 ~ 12.11.	▶ 2020 인권영향평가 실시 - 1차 평가 : 현장조사 및 서면평가 활용 - 2차 평가 : 인권경영위원 전체 공유	평가자 : 인권경영위원 5명 -1차평가 : 지표별 담당위원 -2차평가 : 전체위원 공유
2020. 12. 28	▶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보고	
2021. 1. ~ 3.	▶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보고	인권영향평가 내·외부 결과 전파 및 공유

□ 2019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완사항 조치

항목	보완사항	개선내용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부정적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 정비 보완권고	공단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정비하여 인권부정적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바로신고하여 알릴 수 있도록 조치
산업안전보장	장애인들이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조치 권고	장애인 시설이용이 쉽도록 시설 일부의 도로보수, 화장실 정비 등(불정자영휴양림)로 조치하였으나 차후 지속적 개선이 필요함
산업안전보장	작업장 내 직원·고객 위생과 안전을 위해 외부전문 교육이 이뤄지도록 권고	시설 내 위생과 안전을 위해 직원 교육 실시, 현수막홍보, 포스터 게시 등 산업안전 보장을 위해 조치함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존중에 관한 준수여부 모니터링 권고	협력회사와 각종 계약체결 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을 징구하여 상호 인권보호 존중에 노력함
환경권 보장	환경훼손·재해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고	연간 시설환경관리계획, 에너지절약, 온실가스감축, 환경정비계획 등 환경훼손·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권 보장을 위해 노력함

□ 2020년도 인권영향평가지표 변경

구분	주요 내용				
2019 인권영향 평가결과 환류 ↓ 2020년 인권영향 평가지표 조정	2019년 영향평가 지표(158개)		2020년 조정지표 (108개)		
	NO	체크리스트	NO	체크리스트	반영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30)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30)	-
	2	고용상의 비차별(17)	2	고용상의 비차별(14)	△3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16)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13)	△3
	4	강제노동의 금지(11)	4	강제노동의 금지(7)	△4
	5	아동노동의 금지(14)	5	아동노동의 금지(4)	△10
	6	산업안전 보장(17)	6	산업안전 보장(15)	△ 2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10)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7)	△3
	8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10)	8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1)	△9
	9	환경권 보장(18)	9	환경권 보장(10)	△8
10	소비자 인권보호(15)	10	소비자 인권보호(7)	△8	
※ 기관운영 영향평가의 공단과 해당이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감소 : 50개					

□ 인권경영 전담조직 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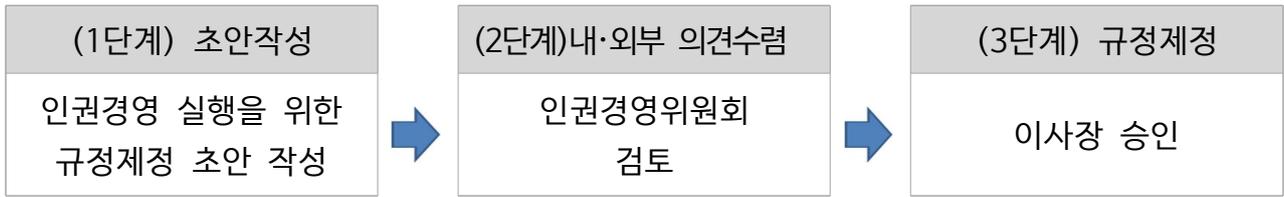
- (전담부서) 경영지원팀
- (담당자 지정) 인권경영 담당자 1명
- (주요 역할) 인권영향평가 근거자료 작성, 인권개선활동, 성과환류 등
- (인권경영 실무자 구성) 조직 내 인권경영에 대해 홍보하고 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장별 인권경영 담당자를 지정·운영
 - 인권경영 추진계획의 전파 및 세부실행과제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실효성 검토

□ 인권경영위원회 및 인권침해구제 기구 설치

- (목적)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 설치
- (기능) 인권경영추진에 관한 제도·정책·개선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권고,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심의 등
- (구성) 5명
 - 내부위원(2명) : 경영지원팀장, 노동조합간부
 - 외부위원(3명) : 시민대표 1인, 공인노무사 1인, 다문화가정센터 1인

□ 인권경영 제도구축

- 인권경영 운영내규 및 인권헌장 제정
 - (목적) 공단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체계적 실행을 위한 관련내규 제정
 - (제정 과정) 내규 제정을 위한 내·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주요내용) 인권경영 운영 내규 주요 사항

총칙 및 일반원칙	인권경영 목적, 정의, 적용범위
인권경영 체계	인권경영 선언, 계획수립, 인권교육, 인권활동 지원
인권위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 구제 절차	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사건처리 절차, 신분보장 등

○ 인권경영헌장 및 선언

- (제정)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정(2018.12.31)
- (선언) 공단 송년회에서 전직원 선포
- (확산-1)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헌장 대·내외 선포(2019.01)
- (확산-2) CEO 취임에 따른 인권헌장 실천다짐 선언(2020.12)

문경관광진흥공단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고객이 행복한 1등 공기업이 되고자 그 사명을 다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으며, 아래와 같이 그 실천을 다짐한다.

- 임직원·이해관계자 차별 금지
- 개인정보 보호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쾌적한 근무환경 제공
- 이해관계자 인권 존중
- 환경관련 법규 준수
- 결사·단체교섭 자유 보장

□ 구제절차의 제공

○ 인권침해 구제 절차 명문화

- (목적) 인권경영 관련 내규 내 인권침해행위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도화
- (주요내용) 인권침해행위 처리 시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조치, 독립된 인권구제위원회(인권경영위원회) 설치·운영

4 평가 개요

○ 평가기간 : 2020. 11. 30. ~ 12. 11.

○ 평가방법 : 인권경영위원회(5명)의 현장확인 · 서면평가 실시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마스크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통한 평가 진행

※ 코로나19관련 서면회의 및 대면회의 활용 개최(*관외 거주 인권경영위원 서면 체크리스트 작성)

○ 평가기준 : 평가기준에 대한 각 지표별 추진실적의 충족도 평가

○ 평가절차

- 평가지표설정 ⇨ 인권경영위 제출심의 ⇨ 결과보고

○ 평가위원 : 총5명(인권경영위원회)

- 내부위원 : 2명
- 외부위원 : 3명

연번	구분	소속 및 직원	기준
1	내부위원	인권경영 담당관(*경영지원팀장 업무대행)	당연직
2		노동조합 부위원장	당연직
3	외부위원	노무사	분야별 전문가
4		다문화○○지원센터 총괄팀장	분야별 전문가
5		관내대학 사무처장	분야별 전문가

○ 평가항목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10개 분야 108개 지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구분	평가지표	평가위원	소속	주관부서
기관운영	1 인권경영체계구축	이*규	노무법인	경영지원팀
		인*원	내부위원	
	2 고용상의 비차별	이*규	노무법인	
		인*원	내부위원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이*규	노무법인	
		인*원	내부위원	
	4 강제노동의 금지	이*규	노무법인	
		인*원	내부위원	
	5 아동노동의 금지	박*미	다문화○○지원센터	
		인*원	내부위원	
6 산업안전 보장	윤*식	관내대학교		
	김*만	내부위원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윤*식	관내대학교		
	인*원	내부위원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윤*식	관내대학교		
	김*만	내부위원		
9 환경권 보장	윤*식	관내대학교		
	김*만	내부위원		
10 고객 인권보호	윤*식	관내대학교		
	인*원	내부위원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5개 분야 12개 지표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구분	평가지표	평가위원	소속	주관부서
관광시설 철로자전거 관광사격장	① 공정운영	이*규	노무법인	경영지원팀
		인*원	내부위원	
	② 사회약자 이용편의시설 보장	박*미	다문화○○지원센터	
		김*만	내부위원	
	③ 안전보장	윤*식	관내대학교	
		인*원	내부위원	
	④ 근무자 인권보호	이*규	노무법인	
		인*원	내부위원	
	⑤ 지역주민 환경보장	윤*식	관내대학교	
		인*원	내부위원	

※ 주요사업선정이유 : 코로나19로 공단 시설의 이용객 급감 및 휴장했음에도 철로자전거, 관광사격장은 고객 외부활동 가능, 비교적 이용이 많은 시설임을 감안하여 주요사업으로 선정함.

○ 세부평가방법

- 평가항목에 따른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평가위원이 체크리스트 작성
 - 1차 평가 : 지표별 담당위원이 평가 실시
 - 2차 평가 : 전체위원들과 함께 1차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평가 실시
- 체크리스트 내 지표 문항 별 5단계로 부여된 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지표별 1~8 등급 부여
- 평가점수 : 체크리스트 내 문항 부여점수

구분		판단기준	조치내용
판단	점수		
예	2	· 지표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지속적 모니터링
보완필요	1	· 지표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나 일부 성과가 있는 경우	· 향후 보완필요
아니요	0	· 지표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나 진전이 없는 경우	· 추진계획 필요
정보없음	제외	· 지표 요구조건의 실행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	· 정보 수집계획 필요
해당없음	제외	· 지표 요구조건이 공단 운영과 관련이 없는 경우	· 해당없음

- 등급체계 : 등급별 백분율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평점	100점 ~90점	90점미만 ~80점	80점미만 ~70점	70점미만 ~60점	60점미만 ~50점	50점미만 ~40점	40점미만 ~30점	30점미만 ~20점	20점미만~ 0점

4

인권영향평가 결과

□ 기관운영 영향평가 결과

○ 평가결과 점수

구분	평가분야	평가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9	1	-	-	-
2	고용상의 비차별	14	-	-	-	-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3	-	-	-	-
4	강제노동의 금지	7	-	-	-	-
5	아동노동의 금지	4	-	-	-	-
6	산업안전보장	15	-	-	-	-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5	1	-	1	-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1	-	-	-	-
9	환경권 보장	9	2	-	-	-
10	소비자 인권보호	7	-	-	-	-
합 계		103	4	0	1	0

○ 종합의견

【결과 그래프】		【점수표】			
		구분	평가 지표	점 수	전년대비
		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95.6	4.6
		②	고용상의 비차별	100	6
		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00	-
		④	강제노동의 금지	100	-
		⑤	아동노동의 금지	100	-
		⑥	산업안전보장	97.2	3.2
		⑦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86.6	13.4
		⑧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100	-
		⑨	환경권 보장	86.6	11.6
		⑩	소비자 인권보호	100	-
평 균			96.6	-	

→ 기관운영 영향평가 결과 96.6점으로, 9등급 중 1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개선되었으나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환경권 보장」 분야를 강화할 것을 권고

○ 기관운영 영향평가 세부내용

연번	평가지표	세부 지표	점 수	
			지표점수	합계
	종합점수			96.6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계		95.6
		분야1	인권존중 정책선언	100
		분야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78
		분야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100
		분야4	인권경영 성과	100
		분야5	구제절차 마련	100
2	고용상의 비차별	계		100
		분야1	고용상 비차별	100
		분야2	고용상 남녀 비차별	100
		분야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10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계		100
		분야1	결사 단체 교섭의 자유	100
		분야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금지	100
		분야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100
4	강제노동의 금지	계		100
		분야1	강제 노동의 금지	100
5	아동노동의 금지	계		100
		분야1	연소자 고용 금지	100
6	산업안전 보장	계		97.2
		분야1	작업장 안전	100
		분야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89
		분야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100
		분야4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지원	100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계		86.6
		분야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100
		분야2	모니터링 실시	60
		분야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100
8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계		100
		분야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보호	100
9	환경권 보장	계		86.6
		분야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70
		분야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90
		분야4	비상계획 수립	100
10	소비자 인권보호	계		100
		분야2	제품 결함 시 조치	100
		분야3	소비자 사생활 보호	100

○ 주요지표별 권고의견

구분	평가분야	의견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활동을 위한 체계구축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인영향평가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협력회사의 인권영향평가에 대해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함
6	산업안전보장(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은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건관리와 근로기준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위험한 사업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법령이 잘 구비되어 있음. 작년 산업안전보장 권고사항인 장애인 이동에 대해서 일부 시설을 보수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불정자연휴양림)하였으나, 시설물 구조상 일부 미비점이 확인되어(국민여가캠핑장) 차후 예산투입과 시설물 보완에 노력이 필요함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징구를 하여 상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 여부를 현장실시로 모니터링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차후 실시에는 설문조사 방법 활용 또한 제시함
9	환경권 보장(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은 현재 환경훼손과 재해 방지를 위해 에너지 절감, 친환경경영실천에 앞장서고 있음. 그리고 녹색제품 구매노력, 재생비닐봉투 사용 등 환경성과 개선에도 지속적 노력을 하고 있음. 하지만 공단 환경관련 정보에 대해 인지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좀 더 체계적 자료관리가 요구됨 · 공단은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부서별 친환경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홍보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함

○ 기관 인권영향평가 총평

총 평

- ▶ 공단은 인권존중 문화조성을 위해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연도별 인권경영 추진계획수립, 인권경영실행지침 제정 및 인권경영헌장 제정 선포, 구제절차 마련 등 인권경영 기반을 구축하였음. 또한, 19년도 인권경영 성과분석을 하여 환류에 노력하였음
- ▶ 인권영향평가는 공단의 임직원, 이해관계자, 지역주민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체계확립과 시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설정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리스트를 기준으로 2020년도는 공단운영과 관련없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더 조정하여 명확한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함
- ▶ 해당이 없는 지표를 조정하여 10개 분야 108개 지표로 기관운영 전반에 인권경영이 적절히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됨.
- ▶ 2019년 인권영향평가 권고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평가점수 또한 향상되었으나 인권영향평가에 놓치는 부분 또한 없는지 지표 발굴에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사업 영향평가

○ 평가결과 점수

구분	평가분야	평가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정운영	3	-	-	-	-
2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보장	1	1	-	-	-
3	안전보장	2	-	-	-	-
4	근무자인권보호	3	-	-	-	-
5	지역주민 환경보장	2	-	-	-	-
합 계		11	1			

○ 종합의견

【관광시설 : 결과 그래프】	【점수표】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평가 지표</th> <th>점 수</th> </tr> </thead> <tbody> <tr> <td>①</td> <td>공정운영</td> <td>100</td> </tr> <tr> <td>②</td> <td>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보장</td> <td>70</td> </tr> <tr> <td>③</td> <td>안전보장</td> <td>100</td> </tr> <tr> <td>④</td> <td>근무자 인권보호</td> <td>100</td> </tr> <tr> <td>⑤</td> <td>지역주민 환경보장</td> <td>100</td> </tr> <tr> <td colspan="2">평 균</td> <td>94</td> </tr> </tbody> </table>		평가 지표	점 수	①	공정운영	100	②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보장	70	③	안전보장	100	④	근무자 인권보호	100	⑤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평 균		94
	평가 지표	점 수																				
①	공정운영	100																				
②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보장	70																				
③	안전보장	100																				
④	근무자 인권보호	100																				
⑤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평 균		94																				

→ 관광시설의 주요사업 영향평가 결과 93점으로 9등급 중 1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약자 이용편의시설보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

○ 주요지표별 권고의견

구분	평가분야	의견
2	사회적약자 이용시설 보장	· 공단 관광시설 철로자전거에 대하여 구랑리역은 사회적 약자 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나, 진남역은 시설 구조적인면에서 화장실, 계단이용이 불편한점 발견. 향후 시설 보수 시 사회적 약자 배려를 고려하여 예산편성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총평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코로나19로 이용객 급감, 대부분의 시설 휴장으로 주요사업 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기로 결정함. 코로나19와 관련해 외부시설로 이용객이 전반적으로 많은 관광시설(철로자전거·관광사격장)을 선정하여 주요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함 ▶ 평가방법은 기관운영 영향평가 방법처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설정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리스트를 기준으로하였으며, 실무자들의 자체 검토를 실시하였음. ▶ 2020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두 곳으로 한정하여 평가를 하였지만, 차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인권영향평가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더불어 시설구조적 면에서 사회적약자 이용시설 개선에 대해 즉각적 조치가 어려운 것은 인지하나,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반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개선에 힘써야 할 것임.

【붙임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세부평가 결과

1. 인권경영체계 구축							해당부서 : 경영지원팀
분야 1	인권존중 정책선언	답변결과					비 고
구분	지표명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12					
1	공단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					인권경영체계 구축
2	인권정책선언은 공단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					내규 제정 의결
3	공단의 인권정책 선언은 공단 내부와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					인권경영위원회 제1차 회의 심의결과
4	공단의 인권정책 선언은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
5	공단의 인권정책 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					인권경영현장 선언 언론기사(20.12)
6	인권정책 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 되고 개선된다.	√					인권경영체계 구축

1. 인권경영체계 구축							해당부서 : 경영지원팀
분야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답변결과					비 고
구분	지표명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10	1				
1	공단은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					'20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2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 규범을 준거로 한다.	√					'20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3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공단 내·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					'20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4	기관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 협의를 한다.	√					'20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5	자회사나 협력회사의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				보완필요
6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20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1. 인권경영체계 구축

분야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 조치					해당부서 : 경영지원팀	
구분	지표명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10					
1	공단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					인권경영실행 지침제정
2	공단은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					인권경영실행 지침제정 제15조(담당부서)
3	공단은 인권준수 시 장치를 마련했다.	√					인권경영실행 지침제정 제24조(담당부서)
4	공단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 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윤리강령 운영내규
5	자회사나 협력회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회사차원에서 대응한다.	√					인권경영실행 지침제정

1. 인권경영체계 구축

분야 4	인권경영 성과					해당부서 : 경영지원팀	
구분	지표명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14					
1	공단은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					'19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2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					'19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3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19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4	인권경영 성과 보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					'19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5	보고는 공단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					'19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6	보고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다.	√					'19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7	보고 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					'19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1. 인권경영체계 구축

분야 5	구제절차 마련					해당부서 : 경영지원팀	
구분	지표명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12					
1	공단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					인권경영실행지침 제5장 인권침해 구제
2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 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3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					인권경영실행지침 제5장 인권침해 구제
4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					인권경영실행지침 제5장 인권침해 구제
5	피해자가 회사 구제절차 이외의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노력한다.	√					인권경영실행지침 제5장 인권침해 구제
6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					인권경영실행지침 제5장 인권침해 구제

2. 고용상의 비차별

분야 1	고용상 비차별					해당부서 : 경영지원팀	
구분	지표명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10					
1	회사는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공단 제규정 준수 (근무 및 복무규정, 취업규칙)
2	회사는 노동자 모집 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3	공단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공단 복리후생규정
4	공단은 노동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연간 인사계획을 바탕으로 승진 및 전보 실시
5	공단은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차별하지 않는다.	√					공단 인사규정

2. 고용상의 비차별							
분야 2	고용상 남녀 비차별					해당부서 : 경영지원팀	
구분	지표명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10					
1	공단은 여성노동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형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적용	
2	공단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	√				공단 보수규정	
3	공단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여성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공단 보수규정	
4	공단은 노동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				연간 인사계획을 바탕으로 승진 및 전보실시	
5	공단은 노동자의 정년, 퇴직 해고에서 여성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공단 인사규정	
6	공단은 여성 노동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				공단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2. 고용상의 비차별							
분야 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해당부서 : 경영지원팀	
구분	지표명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6					
1	공단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사업 장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준수	
2	공단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회사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준수	
3	공단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				공단 보수규정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분야 1	결사 · 단체교섭의 자유	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구분	지표명	답변결과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8					
1	공단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공단은 노동조합 등을 통해 노동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	공단은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노동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					단체협약
4	공단은 정기적으로 노동자 대표와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의하여 결정한다.	√					단체협약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분야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구분	지표명	답변결과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10					
1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 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노동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	노동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노동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 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분야 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해당부서 : 경영지원팀	
구분	지표명	답변결과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	8					
1	공단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공단은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자 대표로서의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	공단은 노동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 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는 공단 대표가 참여하여 상의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공단은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강제노동의 금지

분야 1	강제노동의 금지					해당부서 : 경영지원팀	
구분	지표명	답변결과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14					
1	공단은 모든 종류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준수
2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노동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근로기준법 및 공단 인사규정 및 공무원직 등 근로자 관리내규
3	공단은 노동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각종 신분증 여행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및 공단 인사규정 및 공무원직 등 근로자 관리내규
4	공단은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및 공단 인사규정 및 공무원직 등 근로자 관리내규
5	공단은 노동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강제 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및 공단 인사규정 및 공무원직 등 근로자 관리내규
6	노동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및 공단 인사규정 및 공무원직 등 근로자 관리내규
7	노동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통	√					근로기준법 및 공단 인사규정 및 공무원직 등 근로자 관리내규

5 아동노동의 금지

분야 1	연소자 고용금지					해당부서 : 경영지원팀	
구분	지표명	답변결과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8					
1	공단은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공단 정관 제12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2	공단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15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공단 정관 제12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3	공단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공단 정관 제12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4	공단은 서류를 통해 노동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고용하며 신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한다.	√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3조(구비서류) 확인

6. 산업안전 보장

분야 1	작업장 안전					해당부서 : 경영지원팀	
구분	지표명	답변결과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10					
1	공단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한다.	√					개인안전보호구 지급
2	공단은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					월별 소화시설의 점검
3	사업장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음식 보관시설, 숙소,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					사업부서별 시설안전점검
4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유지관리 대장 관리
5	공단은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	√					특수작업환경측정

6. 산업안전 보장

분야 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해당부서 : 경영지원팀		
구분	지표명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8					
1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					월별 보건관리 실시
2	공단은 임신 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 지 않은 여성 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및 공단 인사규정 및 공무원 등 근로자 규정 준수
3	임신을 한 노동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근로기준법 및 공단 인사규정 및 공무원 등 근로자 규정 준수
4	장애인들이 회사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6. 산업안전 보장

분야 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해당부서 : 경영지원팀		
구분	지표명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10					
1	공단은 노동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월별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2	노동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노동자에게 제공 되고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					안전교육 및 MSDS정보제공
3	작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실시
4	공단은 노동자의 건강장애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은 법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한다.	√					MSDS정보제공 (위험물 보관장소)
5	공단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근로자 정기검진 및 특수 건강검진 실시

6. 산업안전 보장

분야 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해당부서 : 경영지원팀
구분	지표명	답변결과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2					
1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운영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분야 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해당부서 : 경영지원팀
구분	지표명	답변결과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6					
1	공단은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	√					근로자권리 보호이행서약서징구
2	공단은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 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					근로자권리 보호이행서약서징구
3	공단은 협력회사와 계약 시 인권보호·준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					근로자권리 보호이행서약서징구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분야 2	모니터링 실시						해당부서 : 경영지원팀
구분	지표명	답변결과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1				
1	공단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				보완필요
2	공단은 모니터링 결과 협력회사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을 고려한다.				√		해당없음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분야 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해당부서 : 경영지원팀
구분	지표명	답변결과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4					
1	공단은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2	공단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 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분야 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 보호						해당부서 : 경영지원팀
구분	지표명	답변결과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2					
2	관련 법령에서 공단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	√					

9. 환경권 보장

분야 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해당부서 : 경영지원팀
구분	지표명	답변결과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8	1				
1	공단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					경영지원팀-376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계획
2	공단은 환경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				보완필요
3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분기별 점검
4	공단은 회사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녹색제품구매 노력
5	공단은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노동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	√					친환경실천 및 에너지 절감 교육 실시

9. 환경권 보장

분야 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인지						해당부서 : 경영지원팀
구분	지표명	답변결과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1				
4	환경훼손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				환경훼손 최소화

9. 환경권 보장

분야 4	비상계획 수립					해당부서 : 경영지원팀	
구분	지표명	답변결과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10					
1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 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					사업부서별 2020 재난안전 관리 및 교육훈련 계획
2	공단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 진 비상사태 대응 지침에 따른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사업부서별 2020 재난안전 관리 및 교육훈련 계획
3	공단은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 고객 대피를 포함 하여 비상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	√					단산시설 비상훈련 소방합동훈련 실시
4	공단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역사회, 관련 당국, 외부 비상사태 용역회사에 게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마련 해 두었다.	√					비상연락망 구축
5	공단과 병원 간의 거리가 먼 경우 응급조치를 위한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다.	√					비상연락망 구축

10. 소비자 인권 보호

분야 2	제품 결함 시 조치					해당부서 : 경영지원팀	
구분	지표명	답변결과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	2					
1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손실을 당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	√					소비자보호방침 실시

10. 소비자 인권 보호

분야 3	소비자 사생활 보호					해당부서 : 경영지원팀	
구분	지표명	답변결과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12					
1	공단은 소비자의 사생활을 존하고 회사가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
2	소비자 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 되었으며 공개되었다.	√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
3	소비자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 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
4	소비자 정보를 수집할 때 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 한다.	√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
5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
6	소비자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

【붙임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분야 1) 관광시설

분야 1		공정운영					비고
구분	지표명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1	공단은 관광시설을 이용자의 권리침해(차별, 권리제약 등) 없이 운영하고 있다.	√					
2	공단의 관광시설은 성희롱, 성폭력 방지 대책 및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					
3	공단 관광시설 이용자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분야 2		사회적약자 이용편의시설 보장					비고
구분	지표명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1	공단 관광시설의 출입구는 휠체어가 이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2	관광시설의 화장실은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다.	√					

분야 3		안전보장					비고
구분	지표명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1	공단 관광시설은 난간 및 안전울타리 등이 안전관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					
2	공단 관광시설은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다.	√					

분야 4		근무자인권보호					비고
구분	지표명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1	공단 관광시설은 현업 직원들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2	공단 관광시설은 근무자들의 근로환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용품들이 지급되어 있다.	√					
3	공단 관광시설은 근로자의 근무복은 지급되어 있다.	√					

분야 5		지역주민 환경보장					비고
구분	지표명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1	공단 관광시설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및 폐기물을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					
2	공단 관광시설은 운영상의 이유로 주변자연 환경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점감하지 않는다.	√					